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9.4.17.(수) 17:00

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##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하유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4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 이유

-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에 따라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근로자의 권리보호,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(안 제4조)
- 나.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6조)
- 다.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·평가(안 제8조)
- 라.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(안 제10조)
- 마.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·구성·임기 등(안 제11조 ~ 안 제19조)

## 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’을 검토한 결과 조문의 형식과 체계 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,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함.